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(이촌1동 302-75) [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023호

시행일자 2017. 9. 19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」 변경사항 안내

1. 관련근거: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장사업부-1448호(2017. 9. 18)

2. 위 호 관련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「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」 변경 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변경 시행일: 2017. 9. 19(화)

○ 변경 내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대상자 확대	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⇒ 임신 중에만 신청 가능	임신[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]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⇒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(유산)자로, 2017년 9월 19일 이후 출산(유산)자부터 신청 가능 ■ 신청기간: 출산(유산) 후 신청하는 경우, 출산(유산)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■ 지원기간: 출산(유산)후 신청하는 경우, - 지원시작일: 카드수령일(지원금생성일) - 지원종료일: 출산(유산)일로부터 60일 까지
신청 서식 (명칭·내용)	(별지1호) '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	(별지1호) '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' ■ 출산(유산) 확인란, 카드 구분란 추가 ■ 자궁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→ 자궁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*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		* 소변 또는 혈액검사만으로 임신·출산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, 반드시 임신낭이 관찰된 진료를 근거로 임신·출산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■ 임신부→임산부
	(별지2호) '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보고서'	(별지2호) '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' ■ 출산(유산) 확인란 추가 ■ 임신부→임산부

※ 관련내용 및 서식 다운로드

- (구)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(medi.nhis.or.kr) 공지사항
- (구)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(medi.nhis.or.kr) 공지사항 및 서식자료실

붙임: 1. 「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」 변경사항 안내 1부,
2. 「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」 변경에 대한 다빈도 문의 1부,
3. 「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」 변경 관련 Q&A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